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의안

의 안 번 호	1871
------------	------

제안년월일 : 2009. 7. 7.
제 안 자 : 주기명 의원
외 11인

1. 주 문

- 2006.09.15. 결정·고시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 중 원곡동2구역 외 5개구역은 간선도로인 중앙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공단역·안산역·화랑역(미화정)의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함.

2. 제안이유

- 안산시에서는 심각한 주거환경의 악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곡동 2구역을 비롯한 총31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9월 15일 고시하였음.
- 원곡동 2구역 외 5개구역은 현재 제1종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이하, 총수 평균15층이하로 결정하였음.

- 원곡동 2구역 외 5개구역은 안산역·공단역·화랑역(미확정) 역세권에 해당하며 간선도로(중앙로70미터)와 접하고 있고 상·하수도 및 공원·녹지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인근 지역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및 문화복합돔구장 등이 계획되어 향후 개발방향을 고려한다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함.
- 이에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검토 및 변경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주택(아파트)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였음.
- 역세권, 간선도로, 지역별 인구밀도 및 지리적 위치, 주거환경의 열악성, 환경 및 교통성, 도시경관 등 평가지표에 의한 정비예정구역별 평가를 통해 건축물 밀도 조정대상으로 분석된 연립단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변경안(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안산 지역의 주민숙원사항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함.

안산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의문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안산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사회적 제도적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제1절(1)의 단서규정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용도지역 2단계 종상향을 허용해야 한다.
2. 특히 2010 안산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원곡동2구역, 원곡연립1단지 · 2단지 · 3단지, 초지연립1단지 · 상단지 6개 구역은 역세권지역, 간선도로 인접, 주변의 고밀개발 등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곡동2구역 등 6개 구역은 20년 이상의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도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열의가 높고, 안전진단에서 D급 재건축 판정을 받은 시급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2010 안산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속히 승인 하여야 한다.

4.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안산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적 여건,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09. 7.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